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취득 제한 연령기준 완화 및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예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777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취득 제한 연령기준 완화(안 제9조) ····· 2

2.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예외(안 제33조의2 등) ····· 5

Ⅰ.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정 부

나. 제 출 일: 2024. 7. 16.

다. 회 부 일: 2024. 7. 1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까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제한 연령기준 완화(안 제9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1]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미성년자[2]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 5. (생 략)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1. 18세 미만인 사람 2. ~ 5. (현행과 같음)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2)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3].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4],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완화[5]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 대한 자격취득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의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미성년자(민법상 19세)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4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조정(25세 이상→18세 이상, 공직선거법),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연령 하향(18세 이상→16세 이상, 정당법)

5)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완화(20세 이상→18세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을 취득하여 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특히, 「경비업법」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선박직원법」의 해기사 자격 등 아래 표에서 보듯이 다수의 유사 입법례에서도 자격 취득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 취득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6].

[자격취득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한 입법례]

법률	자격 관련 규정
경비업법	·§10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선박직원법	·§6 해기사
원자력안전법	·§85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등
모자보건법	·§15의2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종사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6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건설기계관리법	·§27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6) 2023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합격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8명, 30대 15명, 40대 9명, 50대 이상 27명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합격자 연령별 통계]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0대	8	10	4	4	8	34
30대	10	13	8	11	15	57
40대	14	10	7	16	9	56
50대	5	6	5	16	14	46
60대	3	3	3	9	12	30
70대이상	1	-	-	1	1	3
합 계	41	42	27	57	59	226

※ 자료: 국가유산청

2.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예외(안 제33조의2 등)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벽지를 바르거나 안내판 설치·보수 등 전문적인 수리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국가유산청장 등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ㆍ2. (생 략)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문----------.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 ----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② ~ ④ (생 략)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2. (생 략) 4.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유산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주자[7]가 국가지정유산을 수리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시·도지정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수리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 현황보고·현장공개·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7)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여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설계승인 절차를 보면[8], 발주자는 설계승인을 받기 위하여 설계승인 신청서(사업계획서·설계도서 등 첨부)를 시·군·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국가유산청장 등은 국가유산수리에 국가유산 원형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 전통재료 등이 사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벽지를 바르거나 안내판 설치·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설계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보완·수리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전문적인 수리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설계승인 대상의 예외로 분류하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해당 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수리 관련 현상변경허가 및 설계승인 비교 >

구분	현상변경허가	설계승인
근거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대상행위	ㅇ국가지정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ㅇ국가유산의 수리 행위
목적	ㅇ국가지정유산의 현상(현재의 상태 또는 원형) 변경 제한	ㅇ국가유산 원형 보존·계승
허가(승인) 기준	ㅇ국가유산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ㅇ국가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ㅇ국가유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ㅇ국가유산 원형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할 것 ㅇ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할 것 ㅇ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것
허가(승인) 기관	ㅇ국가유산청장 ㅇ지방자치단체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ㅇ국가유산청장 ㅇ시·도지사
관계	ㅇ**현상변경허가의 대상은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 행위** ㅇ**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현상변경 의제처리 가능(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4)** ㅇ**설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상변경허가 필요**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문 의 처
02)6788-5384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천연기념물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